

# 광주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의 중복된 규제 및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골자

- 1)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제한 규정 일부 삭제(안 제12조 제2호)
  - 제12조 제3호에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
- 2) 행정재산의 사용 갱신허가시 구에서 사전 통보토록 완화(안 제13조)
  - 행정재산의 사용 갱신허가 시 1월 전에 구에서 사전 통보토록 하여 기간 미준수로 인한 변상금 부과사례 예방.
- 3) 토석채취료 부과규정 일부삭제(안 제24조 제5항)
  - 토석채취료의 부과기준은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삭제

## 3. 검토의견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의 중복된 규제 및 구체적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재산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작용의 이용에 제공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부·매각·교환 등 처분이 제한되며,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있는 현행 조례 제12조 제2항에서는 사용허가의 제한 사유로 3가지를 열거하고 있으나, 제2호(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의 규정은 구체성을 결한 포괄적 규정일 뿐만 아니라, 제3호(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된 규제 및 기준이 모호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3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에 대하여 제13조 단서에서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 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간만료 1월 전에 구에서 갱신허가 신청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간 미준수로 인한 변상금 부과 사례를 예방하는 등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24조 제5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토석채취료 징수와 관련하여 제2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산출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5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석채취료 부과기준은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토석채취료 징수에 관한 예외 규정인 제24조 제5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기도 합니다.